

# 천문우주학과 대학원 과정에 관한 학사내규(안)

제정 : 1999년 12월 6일

개정(제9차) : 2019년 6월 XX일

## 제 1 조 (목적)

이 내규는 천문우주학과 대학원의 학사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내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연세대학교 대학원 학칙을 따른다.

## 제 2 조 (학과대학원위원회)

1. 학과의 대학원위원회는 3인 이상의 학과교수로 구성하여 대학원 입학과 졸업, 종합시험, 개설과목설정, 학점이수 및 수료, 지도교수 및 연구실의 배정과 변경, 그리고 논문심사 등 학사전반을 관리하며, 대학원위원회의 주요 결정사항은 전체교수회의의 추인을 받는 과정을 거친다.
2. 대학원위원회는 학부-대학원연계과정의 장학생 선발 심사도 주관한다.
3. 대학원위원회 위원장은 전체교수회의에서 선발된 전공주임교수가 맡거나 학과장이 겸임할 수 있다.

## 제 3 조 (입학)

1. 천문우주학과의 석사과정, 박사과정 및 석박사 통합과정의 입학사정은 당해연도 대학원의 입학전형 규정을 따라 진행되며, 서류심사와 구술시험으로 구성한다.
2. 서류심사의 평가항목은 대학 및 대학원 성적, 학업 및 연구계획서, 학문적합도 등으로 구성되며, 공인영어점수를 제출하는 경우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서류심사를 통해 합격자 및 구술시험 대상자를 선정한다.
3. 구술시험의 평가항목은 전공에 대한 지식, 적성, 그리고 학문에 대한 열정 및 성실성으로 구성되며, 대상자의 서류심사점수와 합산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4. 연세대학교 학부-대학원 연계과정에 선발된 장학생은 대학원위원회에서 부여하는 조교 업무의 성실한 수행을 조건으로 대학원에 진학하는 것이 허락된다.

## 제 4 조 (수료와 졸업, 지도교수)

1. 석사, 박사, 통합과정의 수료는 종합시험 합격, 외국어자격 합격, 그리고 수료최소 학점의 이수가 모두 이루어져야 가능하다.
2. 각 과정의 학생은 첫 2개 학기 이내에 논문지도교수를 확정해야 한다. 논문지도교수의 배정과 변경은 대학원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이루어질 수 있다.
3. 대학원위원회는 교외전문가를 공동지도교수로 배정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학과의 교수가 책임지도교수로 배정되어 해당 학생에 대한 학사 및 논문심사

관리를 책임져야 한다.

4. 졸업과 학위수여는 위 수료자가 대학원에서 규정하는 기간 이내에 지도교수의 지도에 따라 졸업논문을 제출하고 예비심사와 본심사를 통과해야 이루어진다.

#### 제 5 조 (수업 및 수료최소학점)

1. 대학원생은 대학원에 개설되는 모든 과목을 학정번호와 무관하게 수강할 수 있으나, 매 학기 12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다.
2. 수료최소학점은 석사과정 30학점, 박사과정 30학점, 그리고 통합과정 54학점이다. 그리고 취득학점의 총 평량평균이 3.00 이상이어야 한다.
3. 석사과정의 수료최소학점에는 박사과정 과목 수강이 최대 3학점까지 인정된다.
4. 박사과정의 수료최소학점에는 석사과정 과목 수강이 제한없이 인정된다.
5. 지도교수와 대학원위원회의 결정으로 유관분야 타 학과 대학원과목 학점의 일부를 수료최소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은 각각 최대 6학점까지, 그리고 통합과정은 최대 12학점까지 인정한다.
6. 위 인정과목들은 원칙적으로 대학원위원회에서 결정한 과목공유 목록에 등재되어 있어야하며, 그 이외의 경우는 대학원위원회의 논의에 따른다.
7. **타 전공 입학생의 경우 지도교수는 학부기초과목의 보충수강 혹은 청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학점은 수료최소학점에 포함되지 않는다.**
8. 학사-대학원 연계를 위해 학사학위과정 재학시 대학원 과목을 12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으며, 이는 석사 및 통합과정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학사학위 이수학점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9. 각 학위과정의 학생 중 학위수여 자격 요건을 충족한 학생은 정규등록을 한 학기 단축할 수 있다. 단, 통합과정의 학생은 제외한다.
10. **학위논문연구에 대한 학점인정을 위해 강의가 없는 연구과목 및 개별지도연구과목이 개설되어 수료학점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를 규정하는 “천문우주학과 대학원 개설과목 내규”는 대학원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11. **국내외 석학, 우수연구교수 및 전문가초청을 활용한 집중강의 및 현장실습 과목이 대학원위원회의 결정으로 수시 개설될 수 있다. 이 과목들은 방학 중 개설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대학원의 평가보류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해당학기 종료일까지는 성적평가가 제출되어야 한다.**

#### 제 6 조 (외국어자격시험)

1. 학과의 외국어자격시험 합격은 TOEFL iBT 68, IELTS 5.6, TOEIC 610, TEPS 478, New TEPS 256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학원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입학 당시에 이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재학 중 공인성적표를 대학원위원회에 제출하여 합격자격을 획득하여야 한다. 단, 대학원 일반전형의 외국어자격시험 면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자격을 인정한다.

3. 연세대학교 외국어학당에서 진행하는 외국어자격시험 대체강좌의 성공적인 이수를 통해 면제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 외국어자격을 충족하는 것으로 한다.

#### 제 7 조 (종합시험)

1. 종합시험은 재학생을 대상으로 매 학기말에 이루어지며, 석사 및 박사과정 학위 논문 제출자격 획득의 의미를 가진다. **통합과정생은 박사과정의 종합시험에 응시한다.**
2. 종합시험 응시자는 공지된 기일 내에 종합시험 응시원서, 학위논문작성계획서 (자유양식), 성적증명서, 수료최소학점 이수확인서 (자유양식) 각 1부를 대학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종합시험 응시 시기는 수료최소학점을 추가 1학기 이내에 모두 이수할 수 있는 시점으로 하되, 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수료최소학점 이수 이후 최대 1년간 연기할 수 있다.**
4. **석사과정 종합시험은 서류심사로, 박사과정 종합시험은 서류심사와 구술심사로 이루어진다.**
5. 서류심사에서는 수강성적 및 수료최소학점, 논문작성준비를 포함하는 연구계획의 적절성을 평가하며, 구술심사에서는 전공에 관한 지식, 연구주제에 대한 이해도 및 논문연구의 성취도와 잠재적 우수성을 평가한다. 평가항목을 대학원위원회가 추가하는 경우 그 내용은 사전에 공지한다.
6. 구술심사에 사용하는 발표파일은 심사일 이전에 대학원위원회에 제출하여야한다.
7. **종합시험의 결과는 불합격, 수료인정 합격, 논문제출자격인정 합격 등 3가지 중 하나이며, 불합격이거나 수료인정 합격인 경우 1회에 한해 종합시험에 재응시할 수 있다.**

#### 제 8 조 (통합과정 전환과 통합자격시험)

1. 통합과정은 석사학위 없는 박사학위 조기 취득을 목표로 하지만 지도교수와 대학원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석사과정 전환이 가능하다. 석사과정 전환은 통합 3학기 이상 7학기 미만 이수자가 가능하며, 이를 원하는 학생은 통합과정 중단신청서를 제출하고 석사학위 취득을 위한 종합시험에 응시하여야 한다.
2. **석사과정 학생이 희망하는 경우, 학위과정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지도교수와 대학원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통합과정으로 변경할 수 있다.** 단, 이는 석사 2학기 말 또는 석사 3학기 말에 가능하며, 석사 4학기 이상인 자는 신청자격에서 제외된다. 신청자의 학점이수 및 평량평균 기본자격은 대학원 규정에 따르며, 연구역량 평가는 해당학생이 제출하는 성적표 및 연구계획서에 근거하여 대학원위원회에서 진행한다.
3. **통합과정 학생은 정규등록 5학기 초에 대학원위원회의 통합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통합자격시험은 학생이 제출하는 연구경과보고서 및 연구실적에 대한 서

**류심사와 전공에 관한 지식, 연구주제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하는 구술시험으로 구성된다.** 학생의 학업수준과 연구실적, 그리고 연구역량이 박사논문연구에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학원위원회는 석사과정으로의 강제전환을 결정할 수 있다.

#### 제 9 조 (학위논문의 작성과 심사)

1. 석사학위논문은 영문 또는 국문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영문 사용을 권장한다.
2. 박사학위논문은 영문 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국문작성은 대학원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예비심사) 각 학위과정의 예비심사를 위해 학생은 학위논문 초안 원고를 제출해야 하며, 심사종료일 이전에 해당 주제에 대한 학회 발표를 실시해야 한다.**
4. (본심사) 석사 및 박사 수준에 걸맞는 학위논문의 학술적 가치와 독창성 여부를 본심사의 평가기준으로 한다. 단, 박사학위 본심사는 국제 SCI(E) 논문 2편이 게재되거나 게재 확정되고, 그 중 1편 이상이 상위 20% 학술지의 주저자 논문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진행하도록 한다.
5. **(추가 본심사) 제출논문의 중요한 개정이 필요한 경우 심사위원 과반수의 결정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 학기로 졸업이 지연되는 상황을 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학원에서 규정하는 본심사기간과 관계 없이 되도록 이른 시기의 본심사 진행을 권장한다.**
6. 심사위원 구성과 논문제출 관련사항은 대학원 학칙에 따른다.

#### 제 10 조 (석사학위논문 대체실적의 인정)

1. 석사학위논문 제출은 SCI(E) 학술지 주저자 논문의 게재 혹은 게재확정을 대체실적으로 인정하여 대학원위원회와 대학원장의 승인을 거쳐 면제할 수 있다.
2. 통합과정에서 석사로 전환하는 경우 혹은 통합과정 수료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위 실적에 대해 대학원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을 거쳐 석사 학위 수여와 졸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

#### 제 11 조 (재학조교)

1. 대학원 조교는 사무조교, 수업조교, 웹보조 조교, 전산조교 등으로 구분하며, 대학원위원회에서 각 업무의 담당교수와 협력하여 매학기 초에 결정한다.
2. 조교의 장학금과 기타 대학원 장학금의 배정은 대학원의 규정 범위 내에서 대학원위원회가 진행하며, 업무량과 수업이 진행되는 캠퍼스에 따라 차등지급할 수 있다.
3. 학부-대학원 연계과정의 경우와 같이 등록금 전액이 별도로 지급되는 경우, 대학원위원회는 장학금의 추가 지급 없이 해당 학생에게 조교업무의 수행을 요구할 수 있다.